

2024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 지원금 사업 참여자 3차 모집 공고

경기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의 원·하청 이중구조 격차를 개선하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2024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 지원금 사업」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지역 내 자동차산업 기업 및 종사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9. 9.

(사)경기경영자총협회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4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 지원금 사업
- 모집기간 : '24. 9. 9.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경기지역 소재 5인 이상 500인 이하 자동차부품 업종 기업에
'24. 4. 25. ~ 9. 2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한 근로자
- 지원규모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도내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3·6·12개월 근속 시
각 근속기간마다 100만원 씩 1인당 최대 300만원 지급(총 3회)
- 지원방법 : 3·6·12개월 근속 사실 확인 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2. 신청 자격

○ (기업 요건)

지원 대상 기업 요건

▶ 경기도 소재(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의 사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아래의 **필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선택 조건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필수 조건

▶ 24.4.25. ~ 9.20 기간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5세 이상인 자

▶ 선택 조건

① 현대·기아차 협력사(산업분류코드 무관, 우선 순위)

[현대·기아차 협력사 인정 범위]

- 신청일 현재 유효한 SQ인증서(현대·기아차 2·3차협력사 공급자 품질인증제도) 보유 기업
- 원청(현대·기아차)에서 협력기업으로 확인한 기업 *선정심사과정에서 사업수행기관이 현대·기아차에 확인

② 자동차부품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C30) 기업 [별표2 참조]

[지원 제외 사업장]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기업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일반유희 주점업(56211), 무도유희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단란주점, 유희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업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을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 처분을 받고 참여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그 외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수행기관 또는 선정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기업

○ (근로자 요건)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 경기도 소재 지원 대상 자동차부품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로서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① 24.4.25. ~ 9.20 기간 중 경기도 소재 현대기아차 협력사(산업분류코드 무관) 또는 자동차부품제조업(C30)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취업자
· 근로계약서에서 3개월 이내 수습(시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수습(시용)기간과 관계없이 채용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이 '24.04.25. 이후 기간에 해당되어야 지원대상으로 인정
- ②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③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자
- ④ (만) 15세 이상인 자

[지원 제외 근로자]

-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월 기준)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재취업한(재취업하려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유사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 경기도 내 기업 타 법인(경기도 외 소재 지사 또는 법인)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경우
- 그 외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수행기관 또는 선정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4. 참여 및 신청 방법

○ 사업 참여 방법

- 경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http://gyef.or.kr/>) 통한 신청

지원 방법

1. 경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gyef.or.kr) 접속
2. 홈페이지 상단 '경총소식' → '공지사항' 메뉴 클릭
3. 「2024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일자리채움 지원금 사업」 모집 공고 클릭
4. 참여의향서 신청 폼(링크) URL 접속·신청 → 사업 수행기관(경기경총) 확인·검토
5. 사업수행기관(경기경총) 참여의향서 제출 기업 대상, 제출 서류 등 안내 연락
6.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첨부 후 (yoons04@gyef.or.kr) 메일 제출

1. 기업이 참여의향서 신청 폼(링크)을 제출하여도 반드시 공고문 상 붙임의 신청 서류를 모두 접수하여야 사업 참여가 완료됨
2. 신청 인원 전부가 사업에 참여 가능한 것이 아님에 유의
3. 추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4. 본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비인원으로 선정된 경우 수행기관에서 개별 연락 예정

○ 지원금 신청 방법

-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1회차 지원금 신청
 - * 단, 9월 입사자의 경우 1차 지원금 신청기한은 근속일의 3개월이 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까지임.
- 최초 지원금 신청 시 입사일부터 1회차 지원금 신청일까지의 근속 기간 확인 후 지원금 소급 적용
- 2회차 지원금 신청부터는 해당 근속기간(3개월)이 지난 후 다음달 말일 내에 지원금 신청
- 사업 참여 근로자의 신청서류를 기업이 일괄 취합하여 수행기관 (경기경총)에 제출

신청 기한 예시						
취업일	3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마감	취업 후 6개월	2회차 신청마감	취업 후 12개월	3회차 신청마감
'24.5.1	'24.8.1	'24.9.31.	'24.11.1	'24.12.31.	'25.5.1	'25.6.31
※ '입사일'기준 소급 지원(ex.24.5.1.입사자가 24.11.1. 사업 신청 시(근속기간 6월 경과) 입사일자인 5.1일부터 소급하여 2회분 지원금 지급 가능)						

5. 추진 절차

구분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				
신청 프로세스	1 단계 사업공고 [주체: 수행기관]	2 단계 참여의향서 신청 [주체: 참여자]	3 단계 검토 및 선정통지 [주체: 수행기관]	4 단계 승인 및 통보 [주체: 참여자]	5 단계 참여신청서 제출 [주체: 수행기관]
참여 의향서 작성 QR코드 or 링크	자동차부품 상생플러스 		https://naver.me/GL8rhEiJ		
유의 사항	※ 참여신청의향서(인사담당자용) 필수 작성 참여신청의향서 제출 기업 대상 사업참여 적격성 검토통지 및 신청 서류 제출 안내 1. 참여의향서 신청 후 선정된 기업의 기업 및 근로자 '참여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됨 2. 참여신청 서류는 참여 선정된 기업에 추후 안내 3. 신청 인원 전부가 사업에 참여 가능한 것이 아님에 유의 4. 추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6. 신청(제출) 서류

순번	구분	신청서류	
1	사업 참여 신청서	기업	[서식 1] 사업 참여신청서
2			[서식 2] 참여 근로자 명단
3			[서식 5] 사업 지원 및 이행사항 약속서(기업)
4			[서식 7] 정보 활용 및 사업 참여, 청렴이행 약속 등 동의서(기업)
5			[신청일기준] 1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또는 고용보험 사업장 고지(산출)내역서
6			사업자등록증 1부
7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1부
8			(해당시) SQ인증서(현대·기아차 2·3차 협력사 품질인증서) 1부
9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서 1부
10			기타 사업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1	사업 참여 신청서	근로자	[서식 3] 사업 참여신청서
2			[서식 6] 사업 지원 및 이행사항 약속서(근로자)
3			[서식 8]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근로자)
4			근로계약서 1부
5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재직증명서 또는 재직기간 급여이체자료(급여명세서, 이체증) 1부
6			(신청일 기준 2주 이내)고용보험 가입이력내역서(근로자용) 1부 ※ 조회기간(24.01.01부터 ~ 신청일 현재 설정) / 기간 내 이력 전체 선택
7			통장사본(예금주 : 지원대상 근로자) 1부
8			기타 사업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1	지원 금 신청서	근로자	[서식 4] 지원금 지급 신청서
2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고용보험 가입이력내역서(근로자용) 1부
3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재직증명서 또는 지원금 지급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자료(급여명세서 이체증 등)

※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신청시, 지원근로자의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기업이 사업 수행기관에 일괄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기타 유의사항

- (예산범위 내 지급)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충족 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충족 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 하지 않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 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참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4년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 사업」 운영 지침을 따름
-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본부 고용지원4팀 (☎031-289-3485~7,34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식1]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 사업 참여신청서(기업)

기 업 정 보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업종명 (산업분류코드)	※ [별표] 참조하여 업종명 및 산업분류코드 작성	근로자 수 (고·보피보험자)	()명 ※ 신청일 기준
	주요생산품	※ [예시] 구동모터, 배터리 팩 및 부품품 등	주소	

	확 인 사 항	확인여부
지원대상 여부 확인	①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우선순위) ☞ 선정심사과정에서 현대·기아차가 협력사 여부 확인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② 자동차부품제조업(C30) 기업 ☞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해당 기업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신청인원	총인원	()명
-------------	------------	-----------------

<참고사항>

* 신청인원 전부가 사업에 참여 가능한 것이 아님에 유의

** 추후 '참여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사업 참여가 완료되며 예산소진현황에 따라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담당자	성명	직위	이메일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참여자격 확인, (필요 시) 중간점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 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2.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 사업 참여 근로자 명단[서식2] 3.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 사업 지원 및 이행사항 협약서(기업)[서식5] 4. 자동차부품기업 정보 활용 및 사업 참여, 청렴이행 협약 등 동의서(기업)[서식7]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고용보험 사업장 고지(산출)내역서 1부 - 발급일 : 신청일 기준(신규직원 채용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파악 목적) 6. 사업자등록증 1부 7.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1부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확인 가능 서류 8. 기타 사업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최초 신청 시 제출서류 서명/날인 시 법인기업일 경우 법인 직인 필수 (사용인감 가능)
----------------------------	--	---

[서식2]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 사업
참여 근로자 명단**

기업명							
신청인원		()명		비 고			
NO.	성 명	생년월일	나이(만)	채용일	연락처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1		년 월 일		년 월 일			
2		년 월 일		년 월 일			
3		년 월 일		년 월 일			
4		년 월 일		년 월 일			
5		년 월 일		년 월 일			
6		년 월 일		년 월 일			
7		년 월 일		년 월 일			
8		년 월 일		년 월 일			
9		년 월 일		년 월 일			
10		년 월 일		년 월 일			

* 신청인원 전부가 사업에 참여 가능한 것이 아님에 유의

[서식3]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 사업 참여신청서(근로자)

근로자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정규직 채용일	2024년 월 일

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상시근로자 수	()명 ※ 신청일 기준
	업종명 (산업분류코드)	※ [별표] 참조하여 업종명 및 산업분류코드 작성	주소	
	주요생산품	※ [예시] 구동모터, 배터리 팩 및 부품품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	확인 사항	확인여부
	①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우선순위) ☞ 선정심사과정에서 현대·기아차가 협력사 여부 확인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② 자동차부품제조업(C30) 기업 ☞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해당 기업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지원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근로자(신청인)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통장 계좌번호 기입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참여자격 확인, (필요 시) 중간점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구 비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 사업 참여신청서(근로자)[서식 3] 2.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 사업 지원 및 이행사항 약속서(근로자)[서식 6] 3.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 사업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서식 8] 4. 근로계약서 1부 5. 재직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2주 이내) or 재직기간 급여이체자료(급여명세서, 이체증) 6. 고용보험 가입이력내역서(근로자용) 1부 - 발급일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재입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7. 통장사본(예금주 : 지원 대상 근로자) 1부 8. 기타 사업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최초 신청 시 제출서류
------------------	---	-----------------

[서식5]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 사업 지원 및 이행사항 협약서(기업)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사)경기경영자총협회가 수행하는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 사업』에 지원한 당사는 본 사업의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참여자격 확인, 지원 자격 심사, (필요 시) 중간점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부정수급으로 지원 약정 취소, 지원 사업 중단, 기 지원금 반납, 향후 신청금지 등 조치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지원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아니오”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기업 * 지원 대상 근로자 포함 사업 참여 신청일 현재 피보험자수	[] 예 [] 아니오
② 경기도 관내에 사업장(공장)을 둔 기업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이 아닌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되지 않은 사업장	[] 예 [] 아니오
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 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시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예 [] 아니오
⑥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아님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예 [] 아니오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 처분을 받고 참여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⑧ 본 사업의 지원금 대상자가 사업주 본인이거나, 사업주의 배우자나 자녀가 아님	[] 예 [] 아니오
⑨ 근로자가 수령하는 지원금을 대가로 근로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	[] 예 [] 아니오
⑩ 기타 본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기업이 아님	[] 예 [] 아니오
⑪ 본 사업의 운영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확인함	[] 예 [] 아니오

2024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서식6]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 사업 지원 및 이행사항 협약서(근로자)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사)경기경영자총협회가 수행하는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 사업』에 지원한 근로자 본인은 본 사업의 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참여자격 확인, 지원 자격 심사, (필요 시) 중간점검,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등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부정수급으로 지원 약정 취소, 지원 사업 중단, 기 지원금 반납, 향후 신청금지 등 조치 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채용일 기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아니오”에 해당하는자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2024.4.25.이후 기간 중 지원 대상 기업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신규 취업자 * 고용보험 상의 취득일과 근로계약서 상의 정규직 채용일이 같은 날이어야 함	[] 예 [] 아니오
②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 이내 동일 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지 않음 * 기업명, 사업주 등이 바뀌어도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한 경우	[] 예 [] 아니오
③ 최저임금의 100%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로조건을 충족함	[] 예 [] 아니오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자녀의 관계에 있지 않음	[] 예 [] 아니오
⑤ 경기도 내 기업 타 법인(경기도 외 소재 지사 또는 법인) 근무(예정)자가 아님	[] 예 [] 아니오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 아님	[] 예 [] 아니오
⑦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유사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등 본 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이 유사한 사업의 중복참여 배제	[] 예 [] 아니오
※ 다른 사업에서 중복을 불허하여 중복 지원금 반환 필요 시에는 중복을 불허하는 해당 사업의 부당이익 반환절차에 따름	
⑧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가 아님	[] 예 [] 아니오
⑨ 본 사업의 운영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확인함	[] 예 [] 아니오

2024 년 월 일

업체명 :

근로자 :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서식기]

자동차부품기업 정보이용 동의서 및 청렴이행 협약서(기업용)

신청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실무담당자명	(직위:)
	기업연락처	(직위:)	이 메 일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사업 지원 : 접수/심사/지원 등 2024년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사업 사후관리 : 지원 사항 및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메일·연락처·계좌번호(은행)·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4대 보험 가입현황 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2024년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 지원금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신청과 관련된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2024년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경기도, 고용노동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선정 및 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2024년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사업의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등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선발, 지원자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2024년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주민등록, 4대 보험 가입정보 등 2024년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사업 선정 및 참여자 지원금 지급/관리, 설문 조사, 기타 본 사업과 관련사항 등	
제3자 (제공 기관)	경기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업무 관련 기관 등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메일·연락처·계좌번호(은행)·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4대 보험 가입현황 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2024년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신청과 관련된 정보 	
보유·이용 기간	2024년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권리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청렴이행 및 사업 참여에 대한 협약

[서식8]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 사업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최초(신규)입사일자	20 . .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사업 : 접수/심사/추천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사업 사후관리 : 지원사항 및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메일·연락처·계좌번호(은행)·소제지·4대 보험 가입현황·근로계약서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금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한 신청과 관련된 정보 		
보유·이용 기간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사)경기경영자총협회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경기도, 고용노동부,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의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 채용근로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선정 및 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선발, 지원자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권리	(사)경기경영자총협회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 정보는 개인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 채용 근로자에 포함 될 수 없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 4대 보험 가입정보 등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사업 참여기업 선정 및 참여자 지원금 지급/관리, 설문조사, 기타 본 사업과 관련사항 등 		
제3자(제공 기관)	경기도, 고용노동부,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업무 관련 기관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메일·연락처·계좌번호(은행)·소제지·4대 보험 가입현황·근로계약서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사업을 목적으로 한 신청과 관련된 정보 		
보유·이용 기간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지원금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권리	(사)경기경영자총협회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 채용근로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근로자 확인 및 협약사항

확 인 사 항	근로자 확인
① 본 사업을 통해 근로자 본인이 지원금을 지원받는 것을 안내받았다고 알고 있음 ☞ '아니오'일 경우 지원 불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② 개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없음 ☞ '아니오'일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음 ('아니오'일 경우 지원 사업 기재 :)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③ 소속기업이 본 과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사업 만족도 조사 및 현장평가 질의응답 등 적극 협조하겠음 ☞ '아니오'일 경우 지원 불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024 년 월 일 근로자 : (서명 또는 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별표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B F H J N M Q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G I K R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2]

자동차산업 인정 분류코드

* 제11차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1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30123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4	전기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 신제품 부품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신제품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제품 부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제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제품 부품 제조업
				3033	자동차용 신제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제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제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	자동차용 기타 신제품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제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제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제품 의자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제품 부품 제조업		
		304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4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